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건축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통지)를 우편(등기)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, 송달불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. 8. 26.

파 주 시 장

1. **공고내용:** 건축신고 취소 처분사전통지(청문실시통지)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. **예정된 처분의 내용:** 건축신고 취소
3. **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:** 건축신고를 득한 후 2년 이내에 미착수 및 공사에 착수 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**법적근거:** 「건축법」 제11조제7항, 「건축법」 제14조제5항
5. **청문대상**

허가번호	건축주	위치	허가목적	건축(연)면적	청문일시
2013-건축과- 신축신고-9 (2013-01-17)	신○진	동패동 612-9	단독주택	74.725㎡(145.014㎡)	2024. 9. 13. 14:00

6. **청문장소:** 파주시청 민원동 2층 회의실
7. **공고기간:** 2024. 8. 26. ~ 2024. 9. 12.(17일간)
8. **공고방법:**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
9. **기타사항**

○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-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-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(서면, 구술 등)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신고 취소에 의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신고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허가3과 건축신고3팀(☎031-940-474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의견제출서 1부. 끝.